

##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정	2008. 11. 10	조례	제2125호
개정	2010. 6. 28	조례	제2269호(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1. 4. 1	조례	제2316호
일부개정	2011. 7. 6	조례	제2331호
일부개정	2013. 8. 6	조례	제2484호(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4. 1. 10	조례	제2519호(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4. 1. 10	조례	제2520호(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5. 6. 24	조례	제2639호
일부개정	2017. 7. 13	조례	제2845호(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8. 1. 5	조례	제2912호
일부개정	2019. 12. 31	조례	제316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안양문화예술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6. 24>

제2조(적용범위) 안양문화예술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 <개정 2015. 6. 24>

제3조(설립)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4조(사업의 범위)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0. 6. 28, 2011. 7. 6, 2013. 8. 6, 2014. 1. 10, 2014. 1. 10, 2017. 7. 13, 2018. 1. 5>

1.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2.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
3. 지역문화예술 창작·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
4. 안양아트센터·평촌아트홀·안양파빌리온 운영 및 관리
5.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과 조사연구
6. 시민축제 운영 및 관리
7. 김중업건축박물관 운영 및 관리
8.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(APAP) 수립 및 시행
9.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
10. 안양박물관 운영 및 관리
11. 안양예술인센터 운영 및 관리

12.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재단의 목적을 위하여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
제5조(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안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5. 6. 24>

② 시는 재단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6. 24>

제6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5.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7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8. 공고에 관한 사항
9. 사업에 관한 사항
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6. 24>

제7조(이사회)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[전문개정 2019. 12. 31]

제8조(임원)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 <개정 2011. 4. 1>

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
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 <개정 2011. 4. 1, 2019. 12. 31>

④ 대표이사·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. <개정 2011. 4. 1, 2015. 6. 24>

-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 <개정 2011. 4. 1>
- 제9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, 이 사회의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1. 4. 1, 2015. 6. 24, 2019. 12. 31>
-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제4조에 따른 재단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,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신설 2019. 12. 31>
-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1>
- 제10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5. 6. 24>
- 제11조(운영자원 등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원은 시의 출연금, 재단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5. 6. 24>
- 제12조(수익사업 등) ①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6. 24, 2019. 12. 31>
- ② 재단은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용료, 관람료, 사용료 및 대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1>
- ③ 재단은 재단이 운영·관리하는 공공 문화예술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,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1>
- [제목개정 2019. 12. 31]
- 제13조(회계연도)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.
- 제14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안양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5. 6. 24, 2018. 1. 5>
- 제15조(결산서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6. 24, 2018. 1. 5>
- 제16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

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 1. 5>

제17조(협의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임직원의 채용,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임금, 성과급,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재산의 취득·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전문개정 2019. 12. 31]

제18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-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재단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9. 12. 31]

제19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1>

[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5. 6. 24]

[제목개정 2019. 12. 31]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) 「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」 제15조제3

호를 삭제하고, 「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 제12조 중 “시설관리공단”을 “문화예술재단”으로 한다.

제4조(예산의 경과조치) ① 이 조례에 따라서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0. 6. 28 조례 제2269호,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안양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안양문예회관”을 “안양아트센터”로 한다.

② 생략

부칙 <2011. 4. 1 조례 제231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7. 6 조례 제2331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「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종전 안양공공예술재단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공공예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공공예술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포괄승계한다.

부칙 <2013. 8. 6 조례 제2484호,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유유부지 복합문화전시공간”을 “안양천년문화관”으로 한다.

부칙 <2014. 1. 10 조례 제2519호,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알바로시자홀”을 “안양파빌리온”으로 한다.

부칙 <2014. 1. 10 조례 제2520호,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안양천년문화관”을 “김중업박물관”으로 한다.

② 생략

부칙 <2015. 6. 24 조례 제263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7. 13 조례 제2845호,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호중 “김중업박물관”을 “김중업건축박물관”으로 하고,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,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안양박물관 운영 및 관리

9. 안양예술인센터 운영 및 관리

부칙 <2018. 1. 5 조례 제291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12. 31 조례 제316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